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0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30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상설화와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를 상설화 함(안 제3조).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 민관협의회 상설화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5조 및 제6조), 조문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민관협의회 상설화에 따라 실무협의회도 상설화하고(안 제8조 제2항), 실무협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정함(안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
집하고자 할 때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를 “구
성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공공부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
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제1항(안 제5조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

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제2항(안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제8조제5항(안 제6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제정안	수정안
<p>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4조(의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공공부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의장의 직무)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u></p> <p>②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신 설 >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 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한다.

③ ~ ④ (생략)

< 신 설 >

⑤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7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삭제 >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약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의 감사부서장

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

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